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2004067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탁교, 김경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황정화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53390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7.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쪽 8행~5쪽 하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하1행의 "이 사건 이 사건"을 "이 사건"으로 바로잡는다.
- 제1심판결 4쪽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표 하3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바로잡는다.
-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5행의 문단부호 "라."를 "다."로 바로잡는다.
- 제1심판결 5쪽 하7, 6행의 "④" 부분 내용을 "2018. 4. 17. 이 사건 부동산 중 잔존하는 10,000분의 35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접수 제76861호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로 변경 기재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00%를 전부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L 소유의 지분이 제3자인 P, Q, R에게 각각 이전되었으므로, 위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이상 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2019. 3. 11. 그 소수지분권을 확보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이행불능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T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허위 유치권자로서 진정한 유치권자는 S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즉시 인도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와 S, U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 V 부동산인도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041호 건물인도, 서울고등법원 2017라20849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4574호 유치권확인 청구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인도의무 역시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0원을 반환하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과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는, T과 협의를 통해 L, M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0분의 175 지분을 별도로 이전받아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고 소유인 10,000분의 9,825 지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L 명의였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피고에게 위 10,000분의 17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8.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되는 것인바, T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이미 L 등 명의로 있던 위 지분을 모두 확보하였으나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매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최근 U 및 그 대표자 Y을 상대로 한 퇴거단행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32, 2018카합20107) 및 본안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4574)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아무런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제2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 이행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전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 소유인 10,000분의 9,825 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10,000분의 175 지분에 관하여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본문에는 'L 지분 10,000분의 75, M 지분 10,000분의 100을 포함한 매매계약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M가 2018. 2. 21.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도 '원고와 M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M 소유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시키기 위한 용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부합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본문에서 '다만 위 공유자들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로 한다'고 기재된 점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 M, L과의 매매계약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재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매매계약서의 작성만을 별도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고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0원을 수령한 직후 M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이 사건에 이르러 위 5,000,000원이 M의 지분 10,000분의 100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L, M 소유의 지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 소유의 지분을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가 M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배분하여 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 명의였던

10,000분의 7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제9조), 이 특약 조항은 피고가 위 10,000분의 75 지분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원고가 2018. 2. 13.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가계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인 10,000분의 9,825 지분에 관하여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계약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

6) T은 제1심 및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소유인 10,000분의 9,82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고, 나머지 10,000분의 175 지분은 원고와 공동투자사업 약정을 체결한 자신(T)이 확보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1호증)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T의 나머지 증언에 의하면, T이 운영하는 S이 2018. 2. 5. 원고와 W이 체결할 투자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고, 또한 원고와 유치권포기 및 점유해제 현장명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2018. 2. 5.자 투자합의는 W이 합의서에 최종 날인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1) ~ 5)의 사정 및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실제 T이 이 사건 L 등 명의로 있던 소수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종합하면, 위 T의 증언 부분은 이 사건 소수지분의 확보가 최종적으로는 피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자신이 그 업무를 실행함으로써 그 실질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데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너무 쉽게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의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매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으로 되었는지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채무자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와의 관계,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의 이행을 가로막는 법령상 제한의 유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아니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2, 7, 16호증, 을 제5, 7, 14(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T, 이 법원 증인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15, 16, 17, 19, 26, 27호 증의 각 기재, 위 T,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T은 2017. 11. 8.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0분의 500 지분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2017. 11. 27.경 10,000분의 250 지분에 해당하는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후 T의 동업자인 M가 2017. 12. 5.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0분의 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 T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2. 21.까지 나머지 10,000분의 150 지분(10,000분의 250 - 10,000분의 1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2) L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2. 13. P, Q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합계 10,000분의 30 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8. 2. 28. R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0분의 10 지분을 각각 이전하여 주었다(이하 편의상 L, R, P, Q를 '소수지분권자들'로 통칭하고, 그 지분 합계인 10,000분의 75를 '소수지분'이라 한다).

(3) T은 2018. 4.경 L이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사도 없이 1억 원을 지급받았다면서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그 지분 소유권이전을 받기 위하여 R(P, Q를 대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과 그 매수 조건 등의 조율을 계속하였다. T은 2018. 4. 13.경 R의 요구를 수용하여 소수지분을 합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고, L은 그 합의에 따라 2018. 4. 17. R에게 자신의 잔존 지분(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0분의 35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T은 위 합의 무렵 소수지분권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4) R과의 합의에서 T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면 소수지분

권자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수지분의 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8. 4. 31.로 정해진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그에 기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T과 소수지분권자들 사이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5) T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8. 9. 27. M, Z을 대리하여 P, Q로부터 이들이 보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6) 피고는 2018. 10. 12. 원고 및 소수지분권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앞서의 협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가액분할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소수지분권자들은 피고의 소수지분 매수협의를 응하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소수지분권자들로부터 합계 35,000,000원에 소수지분을 전부 매수하였고, 2019. 3. 11. 내지 같은 달 26.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도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L 등의 소수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아가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2018. 6. 30.까지 원

고에게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경우,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을 소수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제9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소수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과 그 이행이 계약에서 정한 잔금일보다도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소수지분권자들이 보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은 전체의 0.75%에 불과하였다. R, P, Q는 L에 대한 채권자로서 담보를 위해 각 지분을 이전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R은 P, Q로부터 그 지분의 처분을 위임받아 T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매매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3) T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중 M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추가 10,000분의 150지분을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T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소수지분권자들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소수지분의 확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수지분의 이전이 잔금지급기일 이후로 지연될 것까지 이미 양해하였으면서도, 이행불능을 주장하면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는 결국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3. 11. R, P, Q로부터 소수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국세 압류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무자력이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가) 갑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U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8. 3. 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한 시점부터 피고와 U 사이에서 U가 유치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처분 및 본안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041, 2018가합104574, 2018라21060, 이 법원 2017라20849 등)이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1, 10, 12, 17,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U(혹은 그 사내이사 Y)는 2018. 3. 3.경 위법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민법 제320조 제2항), 비록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 당시 피고와 U 사이에 유치권의 존부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고가 점유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소 불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의무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 등이 존재한다는 점(갑 제18, 19, 20호증)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

시를 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 해제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제10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인도의무는 위와 같은 피고와 U의 분쟁에 따라 이미 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제2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중도금 지급 후 1주 안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명시하였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제10조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공사에 착공하여 매매대금 완납 이전에 분양을 진행할 경우, 피고는 분양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고,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사에 일찍 착공할 경우 피고의 적극 협조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던 중 특별한 과실 없이 점유를 침탈당한 것으로 보이는바(Y은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인 2018. 3. 3. 용역직원들과 함께 현관문과 유리문을 깨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외벽창문을 깨뜨리고 피고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였고, 그 무렵 'U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2018. 3. 15. Y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4. 30. '2018. 3. 3.자 U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Y

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 20107). 피고가 2018. 5. 10. Y을 상대로 위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였음에도 U의 직원 AB, AC은 퇴거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2018. 7. 20. U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건물퇴거 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인용 결정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32), U가 위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8. 1.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315).

한편 U는 2018. 4. 26.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457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1. 17. 위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U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2. 확정되었다.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

판사 최현종